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침수차 관리 강화를 위해 자동차 정비업자와 정비책임자가 자동차 정비 단계에서 해당 자동차의 침수사실을 인지할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보고·전송토록 하고 위반 시 제재하는 내용으로 「자동차관리법」이 개정(법률 제20298호, 2024. 2. 13. 공포, 2024. 8. 14. 시행)됨에 따라, 침수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보고·전송 의무를 미이행한 정비업자 및 정비책임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전

3) 행정규제 : 규제심사 대상 사전검토 요청

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
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
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46조제5항 및 제64조제2항”을 “제46조제5항·제64조제2항
및 제64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(이하 “직무정지 명령”이라
한다)

가.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
대한 기술인력의 직무정지 명령

나.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자에 대한 정비책임자의
직무정지 명령

별표에 제6호다목14)가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) 정비책임자가 정비 사업자에게 침수 사 실을 보고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보 고하는 경우	법 제64조제3 항	1 차 : 직 무 정 지 1 0 일 2 차 : 직 무 정 지 3 0 일
--	---------------	--

		3 차 : 직 무 정 지 9 0 일
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

별표에 제6호다목14)자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자) 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 직에 침수 사실 전송 의무를 이행하지 아 니한 경우	법 제66조제1 항제13호차목	1차: 사업정지 10일 2차: 사업정지 30일 3차: 사업정지 90일
--	---------------------	--

부 칙

이 규칙은 2024년 8월 14일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1조제2항·제30조의6제2항·제34조의4제3항·제45조의3제4항·제47조제6항 및 제66조제6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, 대체부품인증기관, 튜닝부품인증기관, 자동차검사대행자, 지정정비사업자,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, 자동차관리사업자, 자동차제작자등,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 및 자동차성능·상태점검자에 대한 지정 또는 등록의 취소 및 업무 또는 사업의 정지와 같은 법 제46조제5항 및 제64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 제46조제5항·제64조제2항 및 제64조제3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3조(증거에 의한 처분) ① 관할관청은 「자동차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또	제3조(증거에 의한 처분) ① 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. 1. ~ 3. (생략) 4. <u>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인력의 직무정지명령(이하 “직무정지명령”이라 한다)</u> ② (생략)	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(이하 “직무정지명령”이라 한다)</u> 가. <u>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인력의 직무정지 명령</u> 나. <u>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자에 대한 정비책임자의 직무정지 명령</u> ② (현행과 같음)
--	--